

2021. 2. 5.(금) 10:00

제28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1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전년도 기금결산을 2021년도 계획안에 반영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운용변경 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

- 예치금 회수금액(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 : 834억 원
- 이자 수입 : 6억 원 (※ 833억 × 0.75% = 6억)
- 수입 계획변경에 따른 금융기관 예치금액 : 840억 원

(단위 : 천 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입 변경 계획	수입 총계	84,012,827	57,356,499	26,656,328
	• 공공예금 이자수입	624,705	398,704	226,001
	• 예치금 회수	83,388,122	56,957,795	26,430,327
	- 정기예금	83,300,000	56,300,000	27,000,000
	- 발생이자	88,122	657,795	△569,673
지출 변경 계획	지출 총계	84,012,827	57,356,499	26,656,328
	•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84,012,827	57,356,499	26,656,328

※ 정기예금 발생이자 : 2020. 12. 31.기준 만기 미도래 등으로 감조정

○ 통합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

- 이자 수입 : 0.5억 원 (※ 67억 × 0.75% = 0.5억)
- 수입 변경계획에 따른 금융기관 예치금액 : 68억 원

(단위 : 천 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 입 변경 계획	수입 총계	6,800,625	6,797,250	3,375
	· 공공예금 이자수입	50,625	47,250	3,375
지 출 변경 계획	지출 총계	6,800,625	6,797,250	3,375
	· 통합계정 예치금	6,800,625	6,797,250	3,375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제13조
-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 검토의견

- 2021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이유는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변동되어 수입 및 지출계획의 예치금 항목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제2항에 근거하여 전년도 기금결산을 2021년도 계획안에 반영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금을 운용하고 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여

안정적·계획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정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액 573억 원에서 267억 원 증액된 840억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기정 통합 계정의 예수금 수입은 67억5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자수입은 기정액 4천7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으로 총 68억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함은 기금 운영 목적에 타당함.

○ 위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2021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부.
2) 관계법령1부. 끝.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월 2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통지서 송부, 교육 이수자 관리, 교육 불참자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 ~ 제4조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8조 교육계획 수립, 교육통지서 송부, 교육 이수자 관리, 교육 불참자 통지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 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노래연습장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월 2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이 요구됨
- 직접 운영의 경우 철거업체 선정 및 계약, 관리·감독, 각종 민원 처리 등으로 업무 가중 우려
- 전문 인력의 관리·감독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 수행 가능

4. 주요내용

가. 기술 및 인력,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하며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대행하도록 함.

(1) 위탁내용 :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가)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사업 계획수립

(나)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계약, 관리·감독, 사후정산 업무 등

(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실태조사

나.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이 있더라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하며, 이후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다. 사업 개요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1) 사업규모 : 연간 60 ~ 80가구 내외

(2) 사 업 비 : 381,268천원(국 172, 시 86, 군 123)

(가) 슬레이트 철거처리(주택 :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 면적별 상이)

(나)지붕개량(취약계층 우선) 지원(가구당 최대 427만원)

※ 주택에 한하여 초과비 전액 군비 지원, 추후 국고지원액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

(3) 사업내용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4) 사업 추진현황(최근 3개년)

구분	목표	처리	사업비 (천원)	집행액 (천원)	운영현황			비고
					운영방법	위탁기관	수수료	
'18년	51동	72동	196,120	191,535	위탁운영	(사)한국석면 안전협회	8%	
'19년	43동	61동	174,968	162,785	위탁운영	(사)한국석면 안전협회	8%	
'20년	89동	149동	391,908	378,653	위탁운영	(사)한국석면 안전협회	8%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1) 조사대상 : 7,569동 정도

구분	합계	등재건축물						미등재건축물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시설	기타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시설	기타
달성 군	7,569	2,532	1,086	377	1,199	565	89	549	42	617	305	23	185

(2) 사 업 비 : 34,000천원(국 17,000, 시 8,500, 군 8,500)

(3) 조사내용 :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소유자, 건축용도, 사용 여부, 준공년도, 건축면적, 슬레이트지붕 면적, 지붕덧씌움 여부 등

라. 위탁 운영자 모집 및 선정 개요

- (1)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2) 자격 요건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실태조사와 석면관련 지방자치 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3) 선정 방법 : 서면심사 후 위·수탁자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4) 위탁 수수료 :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정함

5. 향후일정

- 가. 2020. 2. :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선정
- 나. 2020. 3. :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협약 체결
- 다. 2020. 4. ~ 12. : 사업 수행
- 라. 2020. 12. : 정산 보고

Ⅱ. 검토의견

**달성군 슬레이트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민간위탁 운영 동의요청 이유는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및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고, 적정 인원에 따른 업무과중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자격을 가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함.

○ 위와 같이 달성군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동의안 1부.

2) 관계법령 1부.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1. 1. 27.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사유

- 가.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이 요구됨
- 나. 직접 운영의 경우 철거업체 선정 및 계약, 관리·감독, 각종 민원 처리 등으로 업무 가중 우려
- 다. 전문 인력의 관리·감독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 수행 가능

2. 관련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 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주요내용

- 가. 기술 및 인력,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대행하도록 함.
 - (1) 위탁내용 :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 (가)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사업 계획수립
 - (나)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계약, 관리·감독, 사후정산 업무 등

(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실태조사

나.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이 있더라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하며, 이후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다. 사업 개요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1) 사업규모 : 연간 60~80가구 내외

(2) 사 업 비 : 381,268천원(국 172, 시 86, 군 123)

(가) 슬레이트 철거·처리(주택 :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 면적별 상이)

(나) 지붕개량(취약계층 우선) 지원(가구당 최대 427만원)

※ 주택에 한하여 초과비 전액 군비 지원, 추후 국고지원액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

(3) 사업내용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4) 사업 추진현황(최근 3개년)

구분	목표	처리	사업비 (천원)	집행액 (천원)	운영현황			비고
					운영방법	위탁기관	수수료	
'18년	51동	72동	196,120	191,535	위탁운영	(사)한국석면 안전협회	8%	
'19년	43동	61동	174,968	162,785	위탁운영	(사)한국석면 안전협회	8%	
'20년	89동	149동	391,908	378,653	위탁운영	(사)한국석면 안전협회	8%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1) 조사대상 : 7,569동 정도

구분	합계	등재건축물						미등재건축물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시설	기타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시설	기타
달성 군	7,569	2,532	1,086	377	1,199	565	89	549	42	617	305	23	185

(2) 사 업 비 : 34,000천원(국 17,000, 시 8,500, 군 8,500)

- (3) 조사내용 :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소유자, 건축용도, 사용
여부, 준공년도, 건축면적, 슬레이트지붕 면적, 지붕덧씌움 여부 등
라. 위탁 운영자 모집 및 선정 개요
- (1)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2) 자격 요건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실태조사와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3) 선정 방법 : 서면심사 후 위·수탁자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4) 위탁 수수료 :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정함

5. 향후일정

- 가. 2020. 2. :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선정
- 나. 2020. 3. :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협약
체결
- 다. 2020. 4. ~ 12. : 사업 수행
- 라. 2020. 12. : 정산 보고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 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월 2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출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5조의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4. 제출사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지역의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현황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검토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구 분	해제요건
단절토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 ·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 경우에 따라 8m 이상 도로 검토 가능
경계선 관통대지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제곱미터 이하 대지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 및 이에 따라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미만의 소규모 토지도 해제

5.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 60,661㎡

- 단절토지 54,462㎡, 경계선관통대지 6,199㎡

구 분	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		비 고
	개소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18	54,462	30	6,199	
하빈면	2	2,173			
다사읍	2	13,924	6	1967	
화원읍	-	-	2	439	
옥포읍	3	12,991	2	358	
가창면	11	25,374	20	3435	

• 단절토지 : 18개소, 54,462㎡

구분	위 치	면적(㎡)	단절요인	비 고
1	하빈면 대평리 173 일원	753	소로2류	제2종일반주거지역
2	하빈면 현내리 739-3 일원	1,420	중로2류	준주거지역
3	다사읍 문양리 580 일원	9,993	중로2류	제1종일반주거지역
4	다사읍 박곡리 289 일원	3,931	소로1류	제1종일반주거지역
5	옥포읍 본리리 2527-168 일원	1,149	광로2류, 하천	자연녹지지역
6	옥포읍 교항리 1720 일원	6,741	중로3류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7	옥포읍 김흥리 1518-5 일원	5,101	하천	제1종일반주거지역
8	가창면 정대리 613-1 일원	227	하천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9	가창면 냉천리 116-1 일원	1,089	대로1류, 하천	제1종일반주거지역
10	가창면 행정리 307-2 일원	5,122	소로2류	제1종일반주거지역
11	가창면 대일리 12-1 일원	405	하천	제1종일반주거지역
12	가창면 대일리 358 일원	1,377	하천	제1종일반주거지역
13	가창면 대일리 26-2 일원	6,872	하천	제1종일반주거지역
14	가창면 옥분리 463-3 일원	3,748	대로1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	가창면 옥분리 647 일원	419	대로1류	제1종일반주거지역
16	가창면 옥분리 656-2 일원	642	대로1류	제1종일반주거지역
17	가창면 주리 163 일원	1,402	소로2류	제1종일반주거지역
18	가창면 삼산리 377 일원	4,071	대로1류, 하천	제2종일반주거지역

• 경계선 관통대지 및 섬형토지 : 30필지, 6,199㎡

구분		필지	면적(㎡)	비고
해제 대상	소계	30	6,199	
	경계선 관통대지(섬형유발)	14	5,683	
	공간적 연속성 상실토지(섬형)	16	516	

구분	경계선 관통대지 (섬형유발)		공간적 연속성 상실토지 (섬형토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합계	14필지	5,683	16필지	516	
1	다사읍 죽곡리 722	684	다사읍 죽곡리 723	125	①
2	다사읍 문산리 289	743	다사읍 문산리 789	9	②
3	다사읍 문산리 342	399	다사읍 문산리 341	7	③
4	화원읍 본리리 571-2	438	화원읍 본리리 1496	1	④
5	옥포읍 반송리 317	336	옥포읍 반송리 317-1	22	⑤
6	가창면 오리 585	324	가창면 오리 1041	12	⑥
7	가창면 정대리 720-1	325	가창면 정대리 917	92	⑦
8	가창면 정대리 721	236			
9	가창면 냉천리 380-17	58	가창면 냉천리 380-18	123	⑧
			가창면 냉천리 380-19	32	⑨
10	가창면 행정리 877	513	가창면 행정리 1060	1	⑩
11	가창면 행정리 1017	371	가창면 행정리 1085	41	⑪
12	가창면 주리 17-1	215	가창면 주리 17-2	6	⑫
			가창면 주리 17-3	1	⑬
13	가창면 주리 18-2	632	가창면 주리 19-1	10	⑭
			가창면 주리 728-2	28	⑮
14	가창면 옥분리 251	409	가창면 옥분리 239-1	6	⑯

6. 향후추진계획

- 2021. 2. :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 3.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신청(군 → 시)
- 2021. 4. : 관계기관(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2021. 5.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6.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대구광역시)

Ⅱ. 검토의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지역의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현황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검토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 60,661㎡

- 단절토지 54,462㎡, 경계선관통대지 6,199㎡

○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 참고사항(관계법령).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한다.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垞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꺁춘 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제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제2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5조의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 “단절토지”란 영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

1-3-3. “경계선 관통대지”란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경우로서 영 제2조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